예 산 총 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90,511,421	17,715,343
일반회계		523,336,811	15,700,104
특별회계		67, 174, 610	2,015,238
	공기업특별회계	30, 160, 131	904,80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 160, 131	904,804
	기타특별회계	37,014,479	1,110,434
	의료보호특별회계	375,530	11,26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29,900	21,897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370,294	41,109
Ш	수질개선특별회계	34,538,755	1,036,163

- 제 2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당없음"
- 제 4조 [계속비사업조서] "해당없음"
- 제 5조 [명시이월사업조서] "해당없음"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114,500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4,8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